|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 시범의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인증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75호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이하 ‘증치세통합’)시범 작업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치세통합시범범위에 포함되는 납세인(이하 ‘시범납세인’)의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인증처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시범납세인은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인증을 처리해야 한다.  2. 본 공고 제 3조 규정의 정황을 제외하고, 증치세통합 시범실시 전(이하 ‘시범 전’) 과세대상서비스 연간 매출액이 500만 위안 이상인 시범납세인은 국세주관세무기관(이하 ‘주관세무기관’)에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인증 수속을 신청 처리해야 한다. 시범납세인의 시범 전 과세대상서비스 연간 매출액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환산한다. 과세대상서비스 연간매출액= 연속 12개월 미만의 과세대상서비스 영업액 합계 ÷（1+3％）이다.  현행 영업세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차액징수하는 시범납세인의 과세대상서비스 영업액은 공제하기 전의 영업액에 따라 계산한다.  3. 시범 전 이미 증치세일반납세인자격을 취득하고, 과세대상서비스를 겸업하는 시범납세인은 인증을 재 신청할 필요 없이, 주관세무기관에서《세무사항통지서》를 제작 및 송달하여 납세인에게 고지한다.  4. 시범 전 과세대상서비스 연간 매출액이 500만 위안 이하인 시범납세인이 관련 규정조건에 부합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5. 시범 전 시범납세인의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인증은 성국세국에서 본 공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인증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6. 시범실시 후, 조건에 부합하는 시범납세인은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인증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 제22호)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인증을 처리해야 한다. 증치세통합 유관 규정에 따라 매출액 확정 시, 차액공제가 가능한 시범납세인의 과세대상서비스 연간 매출액은 공제하기 전의 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7. 시범납세인이 화물판매를 겸업하고, 가공수리수선노무 및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과세대상화물 및 용역매출액과 과세대상서비스매출액은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각각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인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화물판매를 겸업하고, 가공수리수선노무 및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며, 과세행위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단위 및 자영업자는 소규모납세인에 따라 납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8. 시범납세인이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을 취득한 후, 증치세 탈세, 수출환급편취 및 증치세공제증명 허위발급 등의 행위를 행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최소 6개월의 납세지도기간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9. 본 공고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상해시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시범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인증 유관사항에 관한 통지》(국가세무총국공고 2011년 제 65호), 《국가세무총국의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시범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인증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28호),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일반납세인 자격인증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 33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12월 16일 |  | **国家税务总局**  **关于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有关事项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75号  　　为了保障营业税改征增值税（以下简称营改增）试点工作的顺利实施，现将纳入营改增试点范围的纳税人（以下简称试点纳税人）办理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有关事项公告如下：  　　一、试点纳税人应按照本公告规定办理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  　　二、除本公告第三条规定的情形外, 营改增试点实施前（以下简称试点实施前）应税服务年销售额超过500万元的试点纳税人，应向国税主管税务机关（以下简称主管税务机关）申请办理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手续。试点纳税人试点实施前的应税服务年销售额按以下公式换算：应税服务年销售额＝连续不超过12个月应税服务营业额合计÷（1+3％）  　　按照现行营业税规定差额征收营业税的试点纳税人，其应税服务营业额按未扣除之前的营业额计算。  　　三、试点实施前已取得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并兼有应税服务的试点纳税人，不需要重新申请认定，由主管税务机关制作、送达《税务事项通知书》，告知纳税人。  　　四、试点实施前应税服务年销售额未超过500万元的试点纳税人,如符合相关规定条件，也可以向主管税务机关申请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  　　五、试点实施前，试点纳税人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可由省国税局按照本公告及相关规定制定预认定措施.  　　六、试点实施后，符合条件的试点纳税人应按照《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管理办法》（国家税务总局令第22号）及相关规定，办理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按照营改增有关规定，在确定销售额时可以差额扣除的试点纳税人，其应税服务年销售额按未扣除之前的销售额计算。  　　七、试点纳税人兼有销售货物、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以及应税服务的，应税货物及劳务销售额与应税服务销售额分别计算，分别适用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标准。  　　兼有销售货物、提供加工修理修配劳务以及应税服务，且不经常发生应税行为的单位和个体工商户可选择按照小规模纳税人纳税。  　　八、试点纳税人取得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后，发生增值税偷税、骗取出口退税和虚开增值税扣税凭证等行为的，主管税务机关可以对其实行不少于6个月的纳税辅导期管理。  　　九、本公告自2014年1月1日起施行。《国家税务总局关于上海市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有关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1年第65号）、《国家税务总局关于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有关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28号）、《国家税务总局关于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有关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33号）同时废止。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3年12月16日 |